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1
------	------

제출일 : 2019. 10. .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안전과)

### 1. 개정 이유

2020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2020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63명 증원(국가정책수요 사업 및 지역현안수요 사업 등 추진)됨에 따라,

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729명”에서 “2,792명”으로 63명 증원하며, 세부 내역은

- 일반직(교육전문직 제외) 정원을 “2,506명”에서 “2,551명”으로 45명 증원하고,(안 제2조제2호)

- 교육전문직 정원을 “223명”에서 “241명”으로 18명 증원함(안 제2조제3호)

다. 또한, 직급별 증원 내역은(안 별표3)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465명”에서 “2,510명”으로 45명 증원하고,

- 교육전문직(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194명”에서 “212명”으로 18명 증원함

### 3. 개정안: 붙임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대비표: 붙임

나. 입법예고: 2019. 10. 1. ~ 10. 21. (20일,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29명”을 “2,7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06명”을 “2,5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23명”을 “241”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
	직급별					
총 계			<u>2,792</u>			
정무직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 계		<u>2,541</u>			
	3급		7	7		
	4급		22	19	3	
	5급 이하		<u>2,510</u>			
	전문경력관		2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사		7			
별정직	별정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특정직 계		<u>241</u>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2	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12</u>			

※ ‘—’는 변경된 부분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의 총수는 <u>2,729명</u> 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 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u>2,506명</u>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u>223</u> <u>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u>2,792명</u> ----- -----. 1. (현행과 같음) 2. ----- ----- ----- <u>2,551명</u> 3. ----- <u>241명</u>

※ ‘—’는 변경된 부분임

## 신 · 구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총 계			<b>2,729</b>				총 계			<b>2,792</b>				총 계			<b>2,792</b>						
정무직	정무직 계		1	1			정무직	정무직 계		1	1			정무직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 계		<b>2,496</b>				일반직	일반직 계		<b>2,541</b>				일반직	일반직 계		<b>2,541</b>						
	3급		7	7				3급		7	7				3급		7	7					
	4급		22	19	3			4급		22	19	3			4급		22	19	3				
	5급 이하		<b>2,465</b>					5급 이하		<b>2,510</b>					5급 이하		<b>2,510</b>						
	전문경력관		2					전문경력관		2					전문경력관		2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사		7					연구사		7					연구사		7						
별정직	별정직 계		2				별정직	별정직 계		2				별정직	별정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5급 상당 이하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특정직 계		<b>223</b>				특정직	특정직 계		<b>241</b>				특정직	특정직 계		<b>241</b>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2	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2	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2	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b>194</b>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b>212</b>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b>212</b>						

※ ‘—’는 변경된 부분임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수반요인

- 지방공무원 63명(일반직 45명, 특정직 18명) 인건비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2020년 총액인건비 통보 단가로 산정하되,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2.8%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  
[1인당 단가 : 일반직 75,932천원, 특정직 120,364천원]
- 비용추계기간
  - 일반직 : 2020.1.1. ~ 2024.12.31.(5년)
  - 특정직 : 2020.3.1. ~ 2024.12.31.(4년 10개월)
- 2020년도 인건비 소요액은 일반직은 1년, 특정직은 10개월(3월~12월)간 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방공무원인건비	5,222,400	5,739,822	5,900,562	6,065,793	6,235,641	29,164,218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5,222,400	5,739,822	5,900,562	6,065,793	6,235,641	29,164,218

####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년도: 75,932천원×45명(일반직) + 120,364천원×18명(특정직)×10/12월 = 5,222,400천원
- '21년도: 78,058천원×45명(일반직) + 123,734천원×18명(특정직) = 5,739,822천원
- '22년도: 80,244천원×45명(일반직) + 127,199천원×18명(특정직) = 5,900,562천원
- '23년도: 82,491천원×45명(일반직) + 130,761천원×18명(특정직) = 6,065,793천원
- '24년도: 84,801천원×45명(일반직) + 134,422천원×18명(특정직) = 6,235,641천원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